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3543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피고D

변론 종결2021. 1. 27.

판결 선고2021.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8,4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1, 2, 3, 4호증, 갑가 5호증의 1, 2, 3, 갑나 1, 2호증, 갑나 3호증의 1, 2, 3, 갑나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 가맹점 영업을 위해 충주시 F외 1필지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3건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988,000,000원의 가압류, 청구금액 1,180,000,000원의 가압류, 청구금액 1,397,000,000원의 가압류)와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4. 18.경 E 가맹본부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창업지원형'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E 충주성남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항에서 회사는 참가인을, 경영주는 피고를 뜻한다).

제6조(입지선정 및 영업거점지역)

① 회사는 영업거점지역을 구분(도보 250m 이내 원칙)하고 경영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경영주가 요청시 회사는 가맹점입지를 소개할 수 있다.

③ 경영주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조언 또는 소개를 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경영주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경영주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경영주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제9조(가맹비, 담보제공 및 예치에 관한 사항)

③ 경영주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이행의무 및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 또는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담보설정을 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창업지원형: 금액 50,000,000원

제35조(불가항력에 의한 해지)

① 회사 또는 경영주에게 다음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경영주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해지통보서가 도달한 날에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지된다.

1. 전쟁, 폭동, 지진, 화재, 홍수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점포의 개점 또는 영업과 관련한 법령 상의 제한 또는 관련 법령의 신설, 개폐, 민원, 시위, 소송, 정부 또는 관할관청의 규제 또는 불허가 등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 또는 경영주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 회사 또는 경영주는 제1항의 사유 발생시 손해를 경감시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37조(경영주의 계약해지)

③ 경영주의 사정에 의하여 경영주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주는 최소 3개월 전에 회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진행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전항의 해지 통보서를 받은 경우 경영주의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와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회사가 전항의 해지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경영주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의 폐점할 시에는 제38조와 별도로 임의폐점에 따른 손실 비용 5,0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금 등)

① 경영주의 운영형태가 상생형2 또는 창업지원형의 경우 최초 가맹계약기간 내에 경영주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하거나 경영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경영주는 최초 회사가 임대해준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및 POS/간판 비용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본부지원손실금으로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20. 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8. 5. 3.부터 2023. 5. 2.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에 의하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제2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6%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직후인 2018. 5.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8. 8. 31.에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바, 2019. 4.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9. 4.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피고는 경락인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게 되면서, 2019. 8. 29.경 참가인에게 '2019. 1. 12.자 경매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2019. 8. 31.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9.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이 상호간의 합의 하에 2019. 8. 31.자로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 제4항, 제38조에 근거하여 폐점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청산금 합계 36,968,419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2019. 12. 16.과 2019. 12. 26.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절차이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 이에 참가인은 2020. 1. 30.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36,968,419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상심사를 거쳐 2020. 5. 15. 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36,968,419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금 및 청산금의 지급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36,968,4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36,968,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후 경락인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게 되면서 더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참가인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2)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분석책임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인바, 그렇다면 경매로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3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3건의 가압류등기와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경매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부터 'E충주성남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8. 5.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점포가 2019. 4. 10.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로도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가맹점 영업을 하였고, 2019. 8. 29.경 경매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서 서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경영주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에 있어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참가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사정에 의한 2019. 8. 29.자 가맹계약 해지 통지에 따라 위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 제4항에 기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나 피고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가맹사업자는 판매할 물품이나 영업상 정보, 노하우(know-how)를 가맹본부인 참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그 입지 선정도 가맹사업자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한 것인 점, 가맹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 등에 관하여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권리관계까지 분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동일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가맹사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액 및 그 영업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선정에 관하여 가맹사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경영주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 하거나 경영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명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금액을 경영주가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참가인에게 위 가맹계약 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부지원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① 참가인은 피고가 'E 충주성남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가인이 지원한 인테리어, 운영보조장비,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잔존가액을 손실금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위 'E 충주성남점'은 창업지원형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장비를 임대하거나 설치한 것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장비 대부분을 폐기하게 되어, 참가인이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③ 손실금도 참가인이 지원한 집기류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실금을 청구하는 아닌 점, ④ 참가인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임에도 폐점에 따른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던 점, ⑤ 참가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손해가 매우 적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금으로 36,968,419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고, 피고는 약정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대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6,968,419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